

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

우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 등에 대한 전승지원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고, 그 주요 내용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.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지급 규모 및 방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전수교육지원금(월정액)

- 지원대상 :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
- 지급기준
 - 보유자 : 월 1,500,000원
 - 전수교육조교 : 월 700,000원
 - 보유단체
 - * 보유단체 : 월 3,600,000원
 - *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: 월 5,500,000원
 - * '보유자 없는 보유단체'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가 있는 경우보다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추가 지원. 단, 법인 미전환 단체는 월 4,500,000원 지급

2. 전승취약종목 맞춤형 추가지원

- 지원대상 : 전승취약종목('20.1월 현재 35종목, '20.3월 재선정 예정)

- 예능 : 서도소리, 가곡, 가사, 줄타기, 발탈 (5종목)
- 기술 : 갓질, 한산모시짜기, 매듭장, 나주의 셋골나이, 낙죽장, 곡성의돌실나이, 조각장, 궁시장, 채상장, 장도장, 백동연죽장, 망건장, 탕건장, 입시장, 바디장, 침선장, 제와장, 전통장, 소반장, 금속활자장, 완초장, 누비장, 화각장, 윤도장, 염장, 염색장, 화혜장, 금박장, 궁중채화, 선지장 (30종목)
* '17.3월 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

- 지원성격 : 전승활동 증진을 위한 추가지원금
- 지급방안 : 전승활동 결과 및 재료구입비용, 전시회·공연 개최비용 등 증빙자료 검토 후, 지원한도 내에서 매년 말 1회 지원

○ 지원액

(단위 : 원)

	보유자	전수교육조교	이수자
지원한도	4,716,000	3,132,000	-

* 보유자·전수교육조교가 부재한 전승취약종목의 경우, 이수자에게 최대 3,132,000원 지원

3. 전승활동 장려금(연 1회)

- 지원성격 : 전승활동 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
- 지급방안 : 종목 특성에 따라 분야를 구분, 전승활성화 실적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원
 - 개인종목 : 예능·공예 2개 분야
 - *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
 - ※ 평가항목(안) : 공개행사 평가 결과, 전수교육 횟수 및 계획대비 이행도, 대외전승활동 실적 등
 - 단체종목 : 예능·의식 2개 분야
 - ※ 평가항목(안) : 공개행사 평가 결과, 전수교육 횟수 및 정회원 참여율, 대외 전승활동 실적, 단체 운영의 적절성 (전승지원금 집행, 법인 전환 및 운영 현황 등)
- 지급시기 : '20. 12월(예정)
 - 실적점검 전승활동 기간 : '20. 1월 ~ '20. 10월
 - ※ 전승활동 실적 평가지표 및 포상금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

4. 장학금(월정액)

- 지원대상 : 전수장학생(전승취약종목 선정 종목에 한함)
 - ※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: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
- 지급액 : 월 275,000원
 - ※ '20. 3월에 전승취약종목이 재선정될 예정이며, 기존에 선정('17. 3월)된 전승취약종목 중 재선정되지 않은 종목의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교육기간(5년)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. (단, 5년 이내에 이수증 발급 시 장학금 지급 중단)

5. 특별지원금

- 지원성격
 -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명예보유자 수당(월정액)
 -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장례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
- 지원액
 -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: 월 1,000,000원
 - 장례위로금 : 명예보유자·보유자(1,200,000원), 전수교육조교(600,000원)
 - 입원위로금 : 보유자(500,000원), 전수교육조교(300,000원)/10일 이상 입원 시, 연 1회